

##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와 수서중학교의 상호 협력약정서

본 협약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와 수서중학교(이하 “기관”이라 한다)는 학생 상담 및 인성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약정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력 약정서(이하 “약정”이라 한다)는 양기관 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의 상담자가 수서중학교 학생의 상담 및 사례관리, 추수지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서중학교가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졸업생 및 수련 상담자에게 사례를 의뢰하여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내용) 양 기관은 이 약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자는 수서중학교 학생 중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.
2. 수서중학교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의 부모님과 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상담자에게 학생상담을 의뢰한다.
3. 양 기관은 학생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학생상담을 진행하며 각 기관은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 및 지원을 한다.
4. 상담기간은 상담자와 내담 학생이 동의한 기간으로 하며, 학생상담 기간 동안 부모님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 상담도 병행한다.
5. 양 기관은 지원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진다.

제3조(비밀보장) 상담자와 내담자 학생의 상담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비밀보장 규약을 따라 진행하되,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밀보장을 파기하고 상담교사 및 내담자 학생의 부모님에게 내용을 알린다.

1. 내담 학생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상황이 임박했을 때
2. 내담 학생이 신체·정신·성적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
3. 내담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이나 법정의 요구가 있을 때
4. 내담 학생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

제4조(상담자 윤리) 상담자와 내담자 학생의 상담자 윤리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자윤리규정을 준수한다.

제5조(상담의 종결) 상담자는 내담 학생이 상담 초기 세웠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나,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을 종결한다.

제6조(사례관리) 상담자는 상담이 종결되었을 때 학생 상담결과 보고서를 수서중학교에 제공한다.

제7조(상담자 의무) 상담자는 내담 학생 상담 전 상담자의 교육과 수련내용이 기재된 이력서를 수서중학교에 제출한다.

2014년 5월 30일

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

총장 이 혜 성 (서명)

이혜성 (혜)

수 서 중 학 교

교장 전 종 보 전종보